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9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 박성훈·이헌승·이종욱

김성원 • 안상훈 • 김기웅

박충권 · 김도읍 · 임이자

이상휘 · 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선진화에 기억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 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 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수리·증명 등의 사업자로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하고,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 다.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 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2항 신설).
- 라.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형식승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방법 및 절차"를 "방법·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증을 발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증 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대장의 관리) ① 시·도
	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
	<u>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따라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u>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u>
제14조(형식승인) ① (생 략)	제14조(형식승인) ① (현행과 같
	(
<u><신 설></u>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는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
	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② (생략) 제23조(검정)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 정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신고서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 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증을 발 급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방법·절차, 지정 증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1	
	l .
	l .
	•
	l .